

사 설

고성군의회가 지난 20일부터 24일 까지 5개 읍면 16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시찰을 벌이고, 25일에는 본회의장에서 현지시찰 결과를 발표했다.

홍봉순 의원은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통해 “이번 현지 시찰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현지시찰에는 김진 의원을 제외한 군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주민들을 대신해 주요 사업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한 의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군의원들의 현지시찰 활동은 단순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있게 될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의 때도 거론될 수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이번 군의회 현지시찰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즉각적인 시

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원들도 현지 시찰을 통해 제기한 문제점들이 제대로 시정되고 있는지 끝까지 살펴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면 보다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중대한 사안의 경우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현지 시찰에서는 문제점만 지적된 것은 아니다. 산불헬기 계류장 조성 사업의 경우 굴취 소나무를 공공시설 조경사업에 활용해 예산을 절감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대진리 고성군수협 현장사무소 앞에서 실시되는 향포구내 주변시설 정비사업의 경우 그동안 공간이 비좁아 관광객의 차량 진입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이처럼 군의원들이 행정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주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의정활동이 아닐 수 없다.

재하는 한 우리 지역은 결코 발전할 수 없다.

이럴 때 지방의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민들뿐이다. 공무원들이 주민의 대표인 군의원을 무시한다면, 주민들이 지켜줘야 한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의 경우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지방의원들은 무한한 존경을 받는다.

또한 의원들 스스로 주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소신껏 활동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법적 제도적 한계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갖고 있는 권한만이라도 잘 활용한다면 주민들을 위해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내일부터라도 행사장이나 길거리에서 군의원들을 만나면 ‘고생한다’는 인사말이라도 건네 힘을 실어주도록 하자.

군의회 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문제는 의원들이 순수성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해 제기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일부 공무원들이 달갑지 않게 여기는 태도에 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지 벌써 20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공무원들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는 ‘예’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홍’하는 공무원들이 존

어버이날엔 孝誠(효성; 어버이에게 정성을 다 하여 섬김) 즉 天佑神助(천우신조;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다)하고, 그 가정의 꽃이요 열매인 어린이는 ‘영원한 번영 행복 주인이자 모범자손들이다’.

이들이 剛健(강건;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완전함)하게 成長(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 국가는 제일의로 하여 보호 보장하는 교육적 경제적 문화적 제도에 필요한 자원확보하기 위하여 첫째 영·유아기로부터 필수적 보姆(의무적)제도가 설치확립 하여야 하는 ‘진실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교육(아버이 학교가 설치운영)의 사회교육 내지 국가교육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하겠다. 셋째 부부의 날엔 琴瑟之樂(금슬지락)을, 鼓舞講場(고무찬양)분위기를 조장하여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스승의 恩惠(은혜)에 감사하는 풍토가 조장 되어 건전한 성인으로서 偉容堂堂(위용당당)한 국가 사회인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일군으로서 참되고 의로운 굳센 힘을 가진 새로운 福祉止揚人(복지지양인; 행복이 드높이 오름)이 되어야겠다는 것.

다섯째 민주화운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계속 노력하여 薰進(맥진; 쏘 화살 같이 나아감)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석가 탄신일에 즈음하여 성인의 근본정신을 ‘생활인으로서 본받아 유능한 생산자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겠다는 것’.

일곱째 발명의 날을 되새겨 개인의 소질을 계발 倉曹(창조)하여 人類共榮(인류공영)에 기여한다는 것. 그리고 세계인의 날

금강칼럼

김 종 식
객원논설위원



가정은 나의 운명의 결정체

의 의미와 地球村(지구촌)에 평화 평온 풍요와 안정 늘 즐거움 기쁨을 함께하는 ‘새 한국인으로서 365일 자나 깨나 自然自愛(자연자애) 사랑으로 땅과 바다 그리고 공기를 맑게 깨끗하게 하여 쾌적하고 유쾌한 생활, 상쾌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享有(향유; 누림)함이 소원이라면 우리 모두 소유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地球汚染(지구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宇宙汚染(우주오염; 공기오염 태양계오염)은 自業自得 原理(자업자득원리; 자기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책임진다는 이치) 좇아 우리의 할 일이 태산에 비유할 수 없다.

자손만대를 물려줄 遺業(유업; 남긴 일)을 이 시각이라도 절제하거나 탄산가스로 지구의 온난화 바다에 유입된 스트로 폴 쓰레기가 대표적인데, 남한만큼 면적이 태평양에 형성되어있다는 영상보도에 놀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쓰레기 스트로 폴 조각이 바다 생태계를 파괴시킨 중범이라면 주범은?... 無心히 袖手傍觀(수수

방관; 팔짱만 끼고 옆에서 서서보고 있음)은 더 이상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나무터 아니 우리가족이라도 경계하고 실천에 옮겨야겠다는 것. 즉 사람으로 인하여 발생된 물질은 쓰레기이다.

또한 자연현상에서도 빗겨진 물질로, 바다에 쓰레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바다청결 CAMPAIGN(캠페인;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운동) 한편 원자발전소에서 오염된 *방사능 우리눈 플루토늄 세륨 요오드 등 수거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급하도다.

세상은 앞으로 한 치도 내다 볼 수 없는 세상이라더니 우리 눈앞에 왔음을 보여준 현상이다. 결정적으로 먹이사슬이 오염으로 생명을 위협 받다니 선진제국들은 하루속히 오염물질을 수거처리 하는 방법을... 死後藥方文 格(사후약방문격)이 된다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 지금 실행 하여야겠다. 인류의 생존권 위협한 오염물질을 수거하라! 오염예방 방지하여 생명을 보장하라! 시수적 방어적 지혜가 필수이다.

끝으로 고추의 소중함을 알고 먹어본다. 모든 식품은 정성껏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비로써 효능이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제 체험 경험 한바 과다육식은 질병과 불행의 씨앗을 낳고 과소과대 아닌 알맞게 먹는다는 습관이 필요하다 하겠다.

고추이야기 8) 胃寒疼痛食慾不振(위한동통; 위가 아픔·식욕부진-먹기 싫음) 製法으로 ①고추 잎 한 줌, 계란 1개(깨어 넣고 저어아함), 생강 7조각에 물 3사발을 넣고 반이 되도록 삶아 그 물을 1~2회 복용하면 효험이 있다. ②효능은 영양이 있고 위에 이롭고 腸을 튼튼히 한다. ③고추 생 고추 고춧가루보다 고춧가루가 효능이 뛰어난다. ④만드는 법은 빨간 고추 600g(1근) 썰어 으개 풍기름(낙화생유 또는 면실유) 1.8g(3근) 술에 붓고 연기가 나도록 으켄 고추를 넣은 후 한참 있다가 고추가 까맣게 타올 때 내려놓아 식힌다. 식힌 후 검게 탄 고추를 꺼낸 다음 기름에 큰 병에 담아 두면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는다. ⑤어떤 요리에 쳐서 먹어도 향기롭고 맛이 일품이다. 이 기름을 고춧기름이라 한다.

9) 西瓜=水瓜中毒症(서과=수과=수과중독증세); 빨간 고추 2~3개 잘게 썰어 끓인 물 한 그릇에 담근 다음 식혀서 천천히 마시면 공 효과를 본다.

10) 감기-관드는 법 (1)고춧기름 한 숟가락 (2)흰 파 한 개 (3)생강 작은 것 한 개 함께 분쇄하여 물로 끓여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편집국에서

○...지난해 1월 실시된 거진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후보자 2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재판 결과는 1심과 같은 것이어서, 그동안 법정을 오가며 마음 고생을 한 관련자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무죄가 확정된 박승로씨의 경우 최초 검찰 구형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1심부터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은 상고심까지 끌고가면서 박씨를 괴롭힌 꼴이 되고 말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 20일 • 간별 : 주간

• 우 219-803 •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 편집국 681-1666 • 구독·광고 681-1667 •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최낙관 편집국장 최광호

• 2011년 1월 31일 창간 •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